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의안번호 : 2650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제 출 일 : 2021년 8월 11일
- 회 부 일 : 2021년 8월 18일

2. 제안이유

-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재산분이 폐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대상 기준에 주민세 재산분을 삭제함 (안 제20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세법」 및 「지방세징수법」
-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비용발생 요인 없음).
- 다. 입법예고(2021. 5. 27.~ 6. 16.)결과: 의견 없음.

5. 검토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세 세세목을 단순화한 「지방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성실납부자 선정 기준 대상 지방세 세목을 축소·조정하려는 것임.
- 먼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 사항을 살펴보면, 종전 주민세 세세목 중 균등분의 일부(개인사업자, 법인)와 ‘재산분’이 ‘사업소분’으로 통폐합되어, 종전 5개의 주민세 세세목이 3개로 개편되었음.

* (시행 2021. 1. 1., 법률 제17769호, 2020. 12. 29., 일부개정)

< 지방세법 개정(주민세 과세체계 정비) 내용 >

현행			⇒	개정		
구분	납세의무자	세율체계		구분	납세의무자	세율체계
균등분 (8월)	개인	1만원 內		개인분(8월)	<좌 동>	
	개인사업자	5만원		사업소분 (8월)	사업자	◦ 모든 사업자: 기본세액(5만원*) ◦ 연면적 330㎡ 초과 기본세액+250원/㎡
	법인	5~50만원				
재산분 (7월)	사업자	연면적 330㎡ 초과 250원/㎡		종업원분	<좌 동>	
종업원분	사업자	월급여액×0.5%				

- 한편,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에서는 지방세 체납 발생에도 불구하고 체납처분(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할 수 있는 대상자 선정요건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성실납부자’로 인정될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본 조례 제20조에서는 성실납부자 선정 대상 지방세 세목을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음.

< 체납처분 유예 대상 성실납부자 관련 규정 >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체납처분 유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로 인정될 경우

2.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유예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③ (이하 생략)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현행)

제20조(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가. 성실납부자 선정 대상 세목 정비(안 제20조)

○ 안 제20조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주민세 재산분'이 폐지된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세 성실납부 여부 판단기준 대상 지방세 세목에서 이를 삭제하여 현행 주민세 과세체계와 일치시키려는 것임.

※ 현행 성실납부자 선정 요건으로,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체납하지 아니한 자로 규정하고 있음(본 조례 제20조).

* 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소유분), 주민세 재산분

< 성실납부자 선정 대상 지방세 세목 개정(안) >

현행		개정안
취득세		취득세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제외)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제외)
재산세	⇒	재산세
자동차세(소유분)		자동차세(소유분)
주민세 재산분		〈삭제〉

- 먼저,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세 세세목 중 ‘재산분’이 ‘사업소분’에 흡수·폐지된 사항을 반영하면서도 이를 ‘사업소분’으로 대체하지 않고 삭제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를 살펴보면,

<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

현행	개정안
제20조(채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채납 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u>자동차세</u> 및 <u>주민세 재산분</u> 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채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제20조(채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 ----- ----- ----- ----- ----- 자동차세----- ----- ----- -----.

- 재무국에서는 성실납부자 선정 대상 지방세 세목 중 폐지된 주민세 재산분 건수 점유 비중은 0.4% 수준으로 미미한 반면,
 - ※ '18년~'20년 성실납부자 기준 지방세 중 주민세 재산분 평균 부과건수는 총 부과건수 15,040천건 중 60천건(0.4%)을 차지함.
- 사업소분으로 대체할 경우, 주민세 세목 개편 전의 ‘사업자 균등분’ 및 ‘법인 균등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됨으로써 성실납부자 선정 대상 범위가 현행 보다 10배이상 대폭 확대되어,
 - ※ ('18년~'20년) 주민세 재산분 : 평균 60천건, '21년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서 발송 건수 : 776천건

- 결과적으로 성실납부자 규모의 증가에 따라 체납처분 유예 대상이 과다하게 늘어나게 되어 오히려 체납 징수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고,
- 실제로 본 개정조례안 취지대로 폐지된 ‘주민세 재산분’을 삭제할 경우 체납 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감소 규모는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어, 적절한 체납처분 징수유예 규모 유지를 위해 사업소세로의 대체가 아닌 삭제가 타당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본 조례안에 따른 성실납부자 전/후 비교표 >

구 분	성실납부자 요건 충족 대상	주민세 재산분 제외한 성실납부자 요건 충족 대상
평 균	615,763	614,146
'21년	651,872	650,217
'20년	613,893	612,271
'19년	581,525	579,949

- 다만, 재무국에서는 본 제도에 따른 체납처분 징수유예 실적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는 「지방세징수법」에서 규정한 성실납부자 지원 제도를 사실상 사문화시키고 있는 행태로써,
- 본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 등을 통하여 법률로 보장하고 있는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재무국의 각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나. 시행일 및 경과조치(안 부칙)

- 안 부칙 제1조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의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로 규정하면서, 안 부칙 제2조에서는 본 개정조례안 시행 전에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된 경우 현행 조례의 요건에 따라 성실납부자를 선정하게 하여 제도 변경에 따른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입법 체계상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본 일부개정조례안 부칙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채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제2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전 문 위 원

김 태 한

입법조사관

최 석 훈